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변경 내역 >

-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같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22.6.30일까지)
 -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2.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매월 자가측정 이행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니, 자료제출(시·도별 자가측정 이행실적을 익월 3일까지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행실적 보고(서식).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 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 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 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 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광주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 충청남도지사(푸른하늘기획과장),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녹색기술개발과장,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장), 서울특별시장(대기정책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 금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배출량조사팀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공지요망)

주무관 **모상호** 서기관 **최재웅** 과장 **차은철** 전결 2021. 12. 13.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317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6909 팩스번호 044-201-6915 / pauseless@me.go.kr / 대국민 공개